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(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)·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(법률 제17772호, 2020. 12. 29. 공포, 2021. 6. 3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·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준요양기관·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와의 관련 여부, 징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, 임신·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상한액을 늘리며, 요양병원을 정신병원과 분리하여 규정한 「의료법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4. 8. ~ 5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제1호 중 “요양병원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)”을 “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)·정신병원”으로, “정신과 폐쇄병실”을 “정신과 입원실”로 한다.

제20조제5호 중 “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·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·요양병원”을 “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3항제1호 중 “요양병원”을 “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,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,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”을 “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

에 따른 병원·요양병원·정신병원·종합병원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법 제47조의2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2호 중 “1세”를 각각 “2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임신·출산과 관련된 진료”를 “임신·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임신·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”를 “임신·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·치료재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1세”를 각각 “2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세”를 각각 “2세”로,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“6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140만원”으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전단 중 “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
2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
3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
4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(이하 “준요양기관”이라 한다) 및 법 제51조제

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(이하 “보조기기 판매업자”라 한다)

제8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준요양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별표 2 제1호가목1) 단서 중 “정신과 폐쇄병실”을 각각 “정신과 입원실”로, “요양병원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)”을 “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

한다)·정신병원”으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“요양병원”을 “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“요양병원”을 “요양병원, 정신병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요양병원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)”을 “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)·정신병원”으로, “정신과 폐쇄병실”을 “정신과 입원실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1)·같은 호 라목2) 표의 기관 종류란·같은 호 파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“요양병원”을 각각 “요양병원, 정신병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너목 중 “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요양병원”을 “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요양병원(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

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)”을 “요양병원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3 제2호가목 중 “법 제96조의2”를 “법 제96조의3”으로 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7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96조의2”를 “법 제96조의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신·출산 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6호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1조제2항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[별표 6]

포상금의 지급 기준(제75조제4항 관련)

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

징수금	포상금
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	징수금 $\times$ 20/100
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	200만원 + [(징수금 - 1천만원) $\times$ 15/100]
2천만원 초과	350만원 + [(징수금 - 2천만원) $\times$ 10/100] 다만,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
2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·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

가. 준요양기관·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

- 1) 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그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
- 2)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

징수금	포상금
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	징수금 $\times$ 30/100
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300만원 + [(징수금 - 1천만원) $\times$ 20/100]
5천만원 초과	1,100만원 + [(징수금 - 5천만원) $\times$ 10/100] 다만,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.

나. 준요양기관·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

- 1)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,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
- 2)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,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

징수금	포상금
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	1만원
2만5천원 초과	징수금 $\times$ 40/100

	다만,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다. 그 밖의 신고인: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준요양기관·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

징수금	포상금
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	징수금 $\times$ 20/100
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	200만원 + [(징수금 - 1천만원) $\times$ 15/100]
2천만원 초과	350만원 + [(징수금 - 2천만원) $\times$ 10/100] 다만,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
3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(준요양기관·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제외한다)를 신고한 경우

징수금	포상금
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	징수금 $\times$ 20/100
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	200만원 + [(징수금 - 1천만원) $\times$ 15/100]
2천만원 초과	350만원 + [(징수금 - 2천만원) $\times$ 10/100] 다만,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
4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·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

가. 요양기관·준요양기관·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

- 1) 요양기관·준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, 약사, 간호사,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요양기관·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
- 2) 약제·치료재료의 제조업자·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요양기관·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
- 3)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

징수금	포상금
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	징수금 $\times$ 30/100
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300만원 + [(징수금 - 1천만원) $\times$ 20/100]
5천만원 초과	1,100만원 + [(징수금 - 5천만원) $\times$ 10/100] 다만,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.

나. 요양기관·준요양기관·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

- 1)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,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
- 2) 준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사람,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요양과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준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
- 3)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,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보조기기의 구매와 관련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

징수금	포상금
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	1만원
2만5천원 초과	징수금 $\times$ 40/100 다만,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
다. 그 밖의 신고인: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요양기관·준요양기관·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

징수금	포상금
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	징수금 $\times$ 20/100
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	200만원 + [(징수금 - 1천만원) $\times$ 15/100]
2천만원 초과	350만원 + [(징수금 - 2천만원) $\times$ 10/100] 다만,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.

비고

1. "징수금"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,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,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.
2.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9조(비용의 본인부담) ①·② (생략)		제19조(비용의 본인부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 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 액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.	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
1. 별표 2 제1호가목1)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· 종합병원 · 병 원 · 한방병원 · <u>요양병원</u> (「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 기관 중 정신병원인 <u>요양병원</u>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<u>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</u>) 일반 입원실의 2인실 · 3인실 및 정 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 · 3인 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		1. ----- ----- ----- <u>요양병원</u> (「장 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 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 을 갖춘 의료기관인 <u>요양병원</u> <u>으로 한정한다</u>) · <u>정신병원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</u> ----- <u>신과 입원실</u> ----- -----		

로 부담한 금액	-----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)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0조(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<u>가목·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·요양병원 및 종합병원</u>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: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	5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<u>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</u> <u>규정에 따른 병원, 요양병원,</u> <u>정신병원</u> ----- -----
6.·7. (생략)	6.·7. (현행과 같음)
제21조(계약의 내용 등) ①·② (생략)	제21조(계약의 내용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<u>라목에 따른 요양병원</u> 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: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	1. ----- ----- <u>요양병원(「장애인</u> <u>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4호에</u> <u>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「의</u>

목의 점수와 약제·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(輕重度)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

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,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,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,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,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또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[진단명, 시술명, 중증도(重症度),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]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: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·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

3. (생략)

④ (생략)

료법」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)-----

2. -----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·요양병원·정신병원·종합병원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) ①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.

⑥·⑦ (생략)

제23조(부가급여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이하 “1세 미만 영유아”라 한다)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

제22조의2(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) ① -----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-----

1. ~ 3.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---

⑥·⑦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부가급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2세 -----

-----2세 -----

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)	-----
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·출산 진료비 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을 발급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임신·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</u>	1. <u>임신·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</u> -----
2. <u>임신·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</u>	2. <u>임신·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·치료재료</u> -----
3. <u>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</u>	3. <u>2세</u> ----- -----
4. <u>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</u>	4. <u>2세</u> ----- ----- -----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임신·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: 출산일(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)부터 <u>1년</u> 이 되는 날	1. ----- ----- ----- <u>2년</u> ----- -----

2.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: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

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.

1. 하나의 태아를 임신·출산한 경우: 60만원

2.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·출산한 경우: 100만원

⑧ (생략)

제75조(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)

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.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.

<신설>

2. 2세 -----

--- 2세 -----

---- 2년-----

⑦ -----

-----.

---.

1. -----

--- 100만원

2. -----

----- 140만원

⑧ (현행과 같음)

제75조(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)

① 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-----

-----.

-----.

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⑥ (생 략)

제8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
의 처리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

2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
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
를 받도록 한 자

3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
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
요양기관

4.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
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법
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
관(이하 “준요양기관”이라 한
다)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
보조기기를 판매한 자(이하
“보조기기 판매업자”라 한다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
의 처리) ① ~ ③ (현행과 같
음)

④ 준요양기관은 법 제49조제3
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
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
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
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
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
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

<신 설> ④ (생 략)	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731